

[별첨 7-1]

사고통보 방법

□ 고법 시행규칙[별표 34] 사고의 통보방법 등(제54조제1항 관련)

□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

| 사고의 종류 | 통보방법 | 통보기한 | |
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속보 | 상보 |
| 가. 사람이 사망한 사고 | 전화 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통보 (이하 “속보”라 한다)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 (이하 “상보”라 한다) | 즉시 |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|
| 나.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| 속보 및 상보 | 즉시 |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|
| 다.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(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) | 속보 | 즉시 | |
| 라.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 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(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) | 속보 | 즉시 | |
| 마. 사업장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(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를 제외한다) | 속보 | 즉시 | |
| 비고 : 공사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 | | |

□ 통보내용

사고의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과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통보자의 소속, 직위, 성명 및 연락처
2. 사고발생 일시
3. 사고발생 장소
4. 사고내용
5. 시설현황
6. 피해현황(인명과 재산)